#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(위성곤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8585

발의연월일: 2021. 3. 5.

발 의 자:위성곤·서삼석·송재호

양정숙 • 오영훈 • 윤재갑

이개호 • 이규민 • 이용빈

홍문표 의원(10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실업의 위험에 노출되어 사회·경제적으로 보호 필요성이 큰 예술인,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하여 고용보험이 적용되고 있거나 적용예정임.

그러나 제주특별법에 예술인,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구직급여 요 건과 출산전후급여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제주지역 예술인, 특수 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할 처지에 놓여 있 어 이들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이 시급한 실정임.

이에 제주지역 예술인,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실업상태에 있는 경우 생활안정을 기하고 조기에 재취업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, 출산 등의 이유로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 출산전후급여 등을 지급하여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(안 제402조제3항 및 제4 항). 법률 제 호

##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02조제3항 중 "제108조"를 "제76조의2제1항, 제77조의4제1항, 제77조의9제1항, 제108조"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"제93조제3항"을 "제77조의3제1항제3호 단서, 제77조의3제8항, 제77조의5제2항 및 제3항(근로자의 구직급여에 관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권한을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 조문에 한정한다), 제77조의8제1항제3호 단서, 제77조의8제8항, 제77조의10제2항 및 제3항(근로자의 구직급여에 관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권한을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 조문에 한정한다), 제93조제3항"으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법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혅 행 개 정 아 제402조(산업재해보상보험 등에 제402조(산업재해보상보험 등에 관한 특례) ①·② (생 략) 관한 특례) ① · ② (현행과 같 음) ③ 「고용보험법」 제15조(원 수급인으로부터 제출된 자료의 접수에 관한 권한을 포함한다), 제16조, 제17조, 제20조(일자 리 함께하기, 시간선택제고용, 성장유망업종·지역특화산업, 국 내복귀기업, 전문인력고용, 세 대간 상생고용, 고용환경개선에 대한 지원 등 고용창출에 대한 지원사업에 한정한다), 제21조 부터 제23조(고용유지지원금,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,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, 정년 을 60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의 임금 감액 에 따른 지원금,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,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 려금, 고용촉진장려금의 지원에 관한 권한으로 한정한다)까지, 제24조(건설근로자고용안정지 원금의 지원에 관한 권한에 한

정한다), 제25조제1항(정규직 전환지원금, 시간선택제전환지 원금, 일·가정양립지원 환경개 선 지원금 등 고용안정 및 취 업지원사업에 대한 지원에 한 정한다), 제26조(직장어린이집 의 운영비용의 지원, 대학취업 지원사업 및 전문계고등학교 취업지원사업에 한정한다), 제 29조제1항(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 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지 원에 한정한다), 제31조(중소 기업컨소시엄사업과 우선선정 직종 훈련사업의 지도·감독에 한정한다), 제33조(고용정보의 제공과 고용 지원 기반의 구축 등에 관한 권한에 한정한다. 다 만, 고용안정·직업능력개발에 관한 기반의 구축, 전문인력의 배치사업, 고용정보의 수집·분 석과 직업안정기관에 대한 정 보 제공, 직업·훈련 상담 등의 직업지도에 관한 기법의 연구· 개발·보급, 고용정보의 제공·직 업지도·직업소개의 평가 및 지 원, 고용보험사업에 관련된 전 산망 운영은 제외한다), 제35

조, 제53조, 제70조, 제73조의 2제1항, 제75조, <u>제108조(이양</u>된 권한의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), 제109조(이양된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), 제110조(이양된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), 제112조제1항 및 제118조제4항(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·징수에 한정한다)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하고, 국가사무로서 고용노동부장 관이 처리하던 사무는 도지사가 처리한다.

④ 「고용보험법」 제43조제1 항·제2항, 제44조, 제47조, 제5 1조제1항·제2항, 제52조제1항, 제56조제2항, 제57조제2항, 제 58조, 제60조제1항부터 제3항 까지, 제61조, 제62조제1항·제 3항, 제63조, 제64조, 제65조 제1항·제2항, 제66조제1항, 제 67조제1항, 제68조, 제69조, 제73조, 제74조, 제77조, <u>제</u>93 조제3항, 제97조제2항, 제98 조, 제103조 및 제111조에 따

제76조의2제
1항, 제77조의4제1항, 제77조의9
제1항, 제108조
·
4
제77조
의3제1항제3호 단서, 제77조의3
제8항, 제77조의5제2항 및 제3
<u> 게이경, 게 [[고</u> 기기시시경 첫 세3

른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권한 <u>항(근로자의 구직급여에 관하여</u> 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.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권한을 도

항(근로자의 구직급여에 관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권한을 도 지사의 권한으로 한 조문에 한 정한다), 제77조의8제1항제3호 단서, 제77조의8제8항, 제77조의 10제2항 및 제3항(근로자의 구 직급여에 관하여 직업안정기관 의 장의 권한을 도지사의 권한 으로 한 조문에 한정한다), 제93 조제3항-----

-----.